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5. 6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5. 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5. 1
- 라. 상정일자 : 2003. 5. 6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가. 개정이유

-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 목적, 기능, 구성, 회의 및 재정등에 관한 미비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자문 교수단의 운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이 주요정책 자문이었으나 자문외에 정책개발, 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자문교수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 제1조).

- 자문교수단은 자문외에 정책개발, 평가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2조제2항).
-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를 단장 1인 및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개정(안 제3조제1항).
- 자문교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교수단내에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토록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또는 팀으로,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으로 개정(안 제4조, 제5조제3항).
- 실국장이 개최하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이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는 서산시와 협의한 회의 참석시에만 지급토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자문교수단의 자문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1,2조는 현재 자문기능만 명시되어 있어 정책개발 및 평가 기능 등을 추가하여 자문교수단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 조례안 제3조의 구성 인원을 15인 내외로 규정하므로써 시정 각분야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수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단장,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며, 부단장 2인을 두는 사항을 관내 1명과 관외 자문교수단중 1명을 두어 운영에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안 제10조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청취만으로 해결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는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토록 하고, 장시간의 연구를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기준과 같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41 호
의 결	2003. . .
년 월 일	(제 회)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3. 5. 1.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년월일 : 2003. 5. 1.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 목적, 기능, 구성, 회의 및 재정등에 관한 미비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자문교수단의 운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이 주요정책 자문이었으나 자문외에 정책개발, 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자문교수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 제1조)
- 나. 자문교수단은 자문외에 정책개발, 평가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항을 신설 (안 제2조제2항)
- 다.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를 단장1인 및 부단장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개정(안 제3조제1항)
- 라. 자문교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교수단내에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토록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또는 팀으로,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으로 개정(안 제4조, 제5조제3항)
- 마. 실국장이 개최하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이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바.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는 서산시와 협의한 회의 참석시에만 지급토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사.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아. 자문교수단의 자문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 충청남도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심의를 통한 시정 자문과 정책개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이하 “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문교수단은 제1항의 자문외에 시장이 부의하는 정책개발, 평가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제1항중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내외의”를 “단장1인 및 부단장2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 ①자문교수단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교수단은 분과위원회 또는 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은 분과위원 또는 팀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팀을 대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회의는 관계부서와 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이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서산시와 협의하여 개최하는 자문교수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는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자문은 시장이 인정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문료 지급기준

(제10조제3항과 관련)

자문(연구)기간	지 급 금 액	비 고
2주일까지	1건당 50만원이내	
1개월까지	1건당 100만원이내	
2개월까지	1건당 200만원이내	
3개월까지	1건당 300만원이내	

- ※ 1. 실·과·사업소장은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기획감사담당관은 실·과·사업소장의 자문 협의가 있을시 자문료 지급대상 여부 및 자문료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서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권고·심의를 통해 시정의 자문에 응하는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이하 “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서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권고·심의를 통한 시정 자문과 정책개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이하 “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생략) <신설></p>	<p>제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자문교수단은 제1항의 자문의에 시장이 부의하는 정책개발, 평가등의 기능을 수행한다.</p>
<p>제3조(구성) ①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p>	<p>제3조(구성) ①-----단장1인 및 부단장2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에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4조(운영) ①자문교수단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교수단은 분과위원회 또는 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은 분과위원 또는 팀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단장등의 직무) ①~②(생략) <u>③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u></p>	<p>제5조(단장등의 직무) ①~②(현행과 같음) <u>③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팀을 대표한다.</u></p>
<p>제7조(회의) ①(생략) <u>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국장이 개최한다.</u></p>	<p>제7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u>②분과위원회 또는 팀의 회의는 관계부서와 분과위원장 또는 팀장이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p>
<p>제10조(수당 등) 자문교수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계정지원 등) ① 서산시와 협의하여 개최하는 자문교수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②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는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자문은 시장이 인정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u> <u>③제2항에 의한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u></p>